

제253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
2006.9.4~9.15(12일간)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9. 15.
기획행정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년 8월 28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8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06.9.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1. 제안이유

고액·상습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체납자 정보공개개상자 심의를 위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신설(안 제9조의3)

○ 대상 :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안 제9조의4)

○ 구성 : 위원장(행정부지사) 포함 9인이내

○ 기능 : 체납자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

Ⅲ.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써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각 자치단체에 두도록 하는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세의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명단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없습니다.
- 다만 정보공개대상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써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가 1억원 이상 체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군에 체납액

이 분산돼 있을 경우에 공개대상이 되는지와 만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보공개대상자 범위에 대한 제외규정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 공개대상명단 선정기준일, 공개시기, 처리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
----------	----

제출연월일 : 2006년 8월 2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고액·상습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채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채납자 정보공개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해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채납자 명단공개 제도 신설(신설, 안 제9조의 3)

- 대상 :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채납자

나. 지방세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설치(신설, 안 제9조의 4)

- 구성 : 위원장 포함 9인이내
- 기능 : 채납자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조례 제 17 호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이 경우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시장·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
가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신 설></p>	<p>제9조의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p> <p>①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토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예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이 경우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시장·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9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경험</p>

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
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
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69조의 2(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 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가 1억원 이상인 채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채납액 등(이하 "채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납자의 채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채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채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납자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의2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⑥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채납자명단 공
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채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
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채납자명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채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
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채납액의 세목·납기 및 채납요지
등으로 하고, 채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31>